

의안번호	2214468
의 퇴 인	김남희의원
회 답 일	2026.01.15.
추 계 번호	25C63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무대행기관¹⁾에 지원금을 교부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97억 7,200만원씩 향후 5년간 총 488억 5,900만원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현행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 제도를 준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표 1] 개정안에 따른 국가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안 제86조의6)	9,772	9,772	9,772	9,772	9,772	48,859	9,772

주: 본 추계결과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분에 상응하는 국고지원금(국고지원률 13.9% 적용)이며,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분은 [표 4] 참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6조의6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음	재량규정

1) 안 제86조의2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장의 사용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또는 경영지도사(이하 “법인등”)는 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업장에 관한 신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명세 신고,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명세 신고 등 사용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86조의6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현재 근로복지공단²⁾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사
무대행기관에 지급하고 있는 지원금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
단이 건강보험 사무대행기관에 지원금을 교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
소요를 제시함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2호,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시행
2025.1.1.)²⁾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표 2]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의견과 현행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 지원금 종류와
지급 주기, 지급 기준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사무대행기관에게 지원금을 지급
하는 것으로 가정
 - 참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
조제1항은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을 수 있도
록 규정함
 - 지급 단가는 추계기간 동안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
 -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 지급액 기준도 최근 5년간 고정됨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에 근거함

[표 2]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제도 개요

지원금 종류		지급주기	지급 기준	비고
보험료납부지원금		반기	○ 위임 사업주당 16,000원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 하나만 위임받은 경우 사업주 당 8,000원	○ 100분의 80 이상 납부하도록 한 경우
피보험자 관리지원금	피보험자 관리대행	분기	○ 위임 사업주당 최대 12,000원 ○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15,000원	-
	보수총액 신고대행	연간	○ 위임 사업주 당 18,000원 ○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24,000원 ○ 법정 신고기간 내 신고한 경우 10,000원 추가 지급(단, 노무제공자 제외)	○ 예술인의 경우 5,000원 ○ 단기예술인을 제외한 예술인이 10명 이상인 경우 10,000원
사업장가입지원금		성립 시	○ 위임 사업주당 최대 40,000원 ○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50,000원	-
지급제외			○ 지원금 산정 기준년도의 전전년도 당기순이익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자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2호,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시행 2025.1.1.)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할 경우 증가하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분에 연동되는 국고지원금의 증가분임

-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로 운용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³⁾
- 다만, 건강보험 추가지출만큼 건강보험료 수입액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및

3)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는 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국고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4) 건강보험료율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 후(양출제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 증가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로 볼 수 있음⁵⁾⁶⁾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교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분을 우선 추계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고지원금 증가분을 산출함

가. 건강보험 지출 증가분 추계

- 건강보험 지출 증가분은 보험사무대행 지원금 종류별 위임 사업주 수에 지급 기준액과 지급 주기를 곱하여 추계
 - (위임 사업주 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25년 11월 기준 보험사무 위임 사업장 수가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과거 연도별 보험사무 위임 사업장 수 자료가 생산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위임 사업장 추이를 전망하기 어려움
 - (지급 기준액) 현행 근로복지공단의 보험사무대행 지급 단가를 준용하고,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보험료납부지원금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중 하나만 위임받을 경우 사업주 당 8,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에 대한 위임도 8,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⁷⁾
 - 보수총액신고대행의 경우, 법정 신고기간 내 신고할 경우 10,000원(단, 노무제공자 제

5)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단,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6) 2022~2024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평균 14%를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였음

7) 노인장기요양보험 대행을 함께 위임할 경우 고용·산재와 마찬가지로 16,000원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본 개정안의 범위를 벗어남

- 외)을 추가지급하고 있으므로 모든 대행 건이 법정 신고기간 내 신고되는 것으로 가정
- 사업장가입지원금의 경우, 신규 위임 사업주 유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나, 현재 신규 위임 사업주 수에 대한 통계 자료가 부재하므로 이는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현 근로복지공단 제도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당기순이익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본 추계는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기관 전수가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임

[표 3]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 교부 대상 수 및 지원금 추계

(단위: 원, 개소, 백만원)

지원금 유형	대상 사업장 유형	지급 주기 (횟수)(A)	지급 단가 (B)	위임 사업장 수 (C)	지원금 (D=A×B×C)
보험료납부지원금	30인 미만	반기 (2)	8,000	672,283	10,757
피보험자관리대행	10인 미만	분기 (4)	15,000	594,530	35,672
	10인 이상 ~30인 미만		12,000	77,753	3,732
보수총액신고대행	5인 미만	연간 (1)	28,000	452,804	12,679
	5인 이상 ~30인 미만		34,000	219,479	7,462
지원금 총액	70,30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2호,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 교부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지출소요는 매년 703억 100만원씩 향후 5년간 총 3,515억 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지출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안 제86조의6)	70,301	70,301	70,301	70,301	70,301	351,506	70,3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증가분 추계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분에 국고지원율을 곱하여 산출
 -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양출제입의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 예상 지출 증가분만큼 예상 수입액이 증가하므로, 지출 증가분에 국고지원금이 연동된다고 가정
 - 국고지원율은 최근 3년(2022~2024년) 결산 상 실제 수입액의 평균인 13.9%를 준용
- 추계 결과,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 교부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97억 7,200만원씩 향후 5년간 총 488억 5,900만원으로 추계됨
 - 본 추계는 현행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 제도를 준용하여 산출한 결과임

[표 5] 개정안에 따른 국고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안 제86조의6)	9,772	9,772	9,772	9,772	9,772	48,859	9,77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